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제정 2021· 5· 10 조례 제1706호
일부개정 2024· 4· 4 조례 제20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4>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4. 삭제 <2024· 4· 4>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1.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삭제 <2024·4·4>

4. 삭제 <2024·4·4>

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간소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4>

1. 병풍, 상, 향로, 촛대, 장의차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사망자 이송, 검안, 안치 및 화장비용

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지원금액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4>

제6조(지원신청)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업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무연고확인요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4>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래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래업체 및 장래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4]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단체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4·4〉

② 시장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4·4〉

[중전 제8조에서 이동 2024·4·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전 제9조에서 이동 2024·4·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4 조례 제2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면)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 동의서

이천시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 공영장례 지원 |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민감정보 처리 내역

|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 공영장례 지원 | 3년 |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중요·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 장애등급, 생년월일 | 공영장례 지원 | 3년 |

※ 위의 중요·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중요·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